Ⅲ 주요국 지속가능 공시제도 도입 논의

1. EU SFDR과 CSRD의 주요내용

가. EU의 지속가능공시 관련 제도

EU는 2014년 시행된 비재무정보보고지침(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이하 'NFRD'라 함)을 시작으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제도를 만들어 왔다. EU는 2021년 3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이하 'SFDR'라 함) 시행에 이어 NFRD의 내용을 개정한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이하 'CSRD'라 함)의 초안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2022년 11월, EU는 CSRD 이행을 위한 표준을 제시하는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라 함) 최종안을 공개하였는데, 이 표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NFRD, SFDR, CSRD 등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U의 입법은 '규정(Regulation)' 또는 '지침(Directive)'으로 이루어진다. 규정(Regulation)은 시행과 동시에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어 그 자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회원국은 규정에 맞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반면 지침(Directive)의 경우 회원국이 지침의 규율 대상이 됨을 뜻하여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침에 따른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회원국에 재량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입안된다. EU 역내 활동 기업에 적용되는 NFRD, CSRD는 '지침'에 속하며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SFDR은 '규정'에 속한다.

〈표 Ⅲ-1〉 EU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지침 및 규정

제도	채택	시행	적용대상	비고
비재무정보 보고지침 (NFRD)	2014	2018[1)]	• 직원 500명 이상 •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 2023년까지 적용 • 이후 CSRD로 대체 • 약 11,700개 기업에 적용
지속가능 금융공시 규정 (SFDR)	2019	2021 (Lv.1) 2023 (Lv.2)	• 금융기관(EU 역내 은행,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 1단계(Lv.1)는 참조기간 (세부 사항 없음) • 2단계(Lv,2)는 세부 이행 규칙을 담은 표준에 따라 적용
기업지속 가능성 보고지침 (CSRD)	2021	2024	• NFRD 적용기업	• 약 49,700개 기업에 적용 • 2026년까지 (FY25) 대기업이 적용 대상 • 2027년부터 (FY26) 상장 중소기업 및 캡티브 보험회사 또한 적용 대상에 포함 • 비상장 중소기업은 2028년까지 옵트아웃 형식으로 공시 의무 면제
		2025[1)]	• 직원 250명 이상 • 자산 2천만 유로 이상 또는 • 순매출 4천만 유로 이상	
		2026[1)]	• 직원 10명 이상 • 순매출 70만 유로 이상 • 자산 35만 유로 이상	

주: 1) 셋 중 두 개의 조건이 충족해야 함
자료: Deloitte(2022), EC(2022)

〈그림 Ⅲ-1〉 EU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제도 타임라인

자료: ESMA(2022), Deloitte(2022)

1)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EU는 2014년에 비재무정보 및 다양성 정보 공시에 관한 지침(NFRD)을 도입하고 2018년부터 직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NFRD 시행 당시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서로 다른 보고서 간 정보를 비교하기에 쉽지 않아 정보의 활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 그리고 2019년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는 EU 그린딜이 발표되면서 비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됐다. 이에 따라 NFRD 개정 논의가 시작되고 2021년 NFRD 개정안인 CSRD가 채택되었다. CSRD는 NFRD와 다른 제도가 아니라 NFRD를 발전적으로 대체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CSRD의 핵심은 의무 정보 공시 대상 및 공시 내용의 확대, 정보의 신뢰성, 비교성 및 접근성 제고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제도 준수 부담의 차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NFRD는 직원 500인 이상이면서 순매출이 4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자산 총액이 2천만 유로 이상인 상장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었으나, CSRD는 모든 상장 기업, 비상장 대기업, EU 역내 상장된 외국 법인에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그 대상이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보고 내용 또한 NFRD의 주요 5개 주제(환경보호, 사회책임 및 종업원 대우, 인권 보호, 부패 및 뇌물 방지, 이사회 다양성 등)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회사 정책 시행 결과, ESG 리스크 관리 방안, 이중 중요성 공시 등 요구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CSRD는 NFRD와 다르게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제3자 검증을 요구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집중한다. 이와 더불어 EU 차원에서 CSRD 이행을 위해 유럽만의 지속가능성 공시표준인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을 제정함으로써 보고기업 간 보고서 내 정보와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제도 도입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부담을 차별화했다. CSRD에 따라 NFRD의 적용을 받는 상장 대기업은 2024년부터 2023년 회계연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025년부터는 직원 250명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 대기업, 2026년부터는 직원 10명 이상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그 대상이 된다(〈표 Ⅲ-1〉 참조). 다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옵트아웃 형식으로 공시 의무에서 면제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은 중소기업의 지배구조, 조직 등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표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 이행에 대한 부담을 차별화하였다.

〈표 Ⅲ-2〉 NFRD와 CSRD 비교

구분	NFRD	CSRD
채택	2014년	2021년
시행	2018~2023년	2024년(2026년까지 적용기업 확대)
적용 기업 수	약 11,700개 기업	약 49,000개 기업
보고요건 범위	• 환경보호 • 사회책임 및 종업원 대우 • 인권 보호 • 부패 및 뇌물 방지 • 이사회 다양성	• NFRD의 보고요건 범위 •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 기업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중 중요성) • ESG 장기 목표 및 정책에 대한 정보 • 사회, 인간,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에 대한 정보 • TCFD에 따른 지구온난화 1.5도 제한을 위한 기후 시나리오 • SFDR 및 EU 택소노미 규정을 준수하여 공시
3자 검증 여부	3자 검증 의무 불필요	3자 검증 필요
보고 위치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혹은 연간 경영보고서(Management report) 내	연간 경영보고서 내
포맷	온라인 PDF 파일	전자 포맷(XHTML)

자료: Deloitte(2023)

2)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SFDR)

CSRD는 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침'이라면, SFDR은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EU의 지속가능금융 실행계획(EU 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의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민간 자본의 지속가능투자를 촉진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SFDR 제정을 추진했다. EU 역내 금융회사의 투자 및 상품 관련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SFDR의 핵심이다. SFDR은 2021년 3월 1단계(Level 1) 시행 후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을 거쳐 2023년 세부 기술 표준(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이하 'RTS'라 함)을 담은 2단계(Level 2)가 시행되었다. 이행 1단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으나, 이행 2단계가 시행된 2023년부터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하고, 금융회사는 RTS에 따라 지속가능 금융공시를 이행해야 한다.

SFDR의 체계는 금융회사 단위(Entity-level)와 금융상품 단위(Product-level)의 공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회사 단위' 공시 사항에 따라 정량적 공시와 정성적 공시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먼저 금융회사는 자사의 자산운용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이하 'PAIs'라 함)을 미치는 18개의 지표를 담아 정량적 공시를 해야 한다(〈표 Ⅲ-3〉 참조).

〈표 Ⅲ-3〉 부정적인 영향(PAIs)과 관련한 18가지 의무공시 사항

투자 대상	지표 분류	적용 지표
기업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량 • 탄소발자국 • 투자 대상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 • 화석연료 부문 익스포저 • 재생 불가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 고영향 기후부문별 에너지 소비 강도
	생물다양성	생물 다양성 민감 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물	오염수 방출
	폐기물	유해 폐기물 및 핵폐기물 비율
	사회 및 노동자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위반 • UNGC 원칙 및 다국적 기업을 위한 OECD 지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및 규정 메커니즘 부재 • 조정되지 않은 성별 임금 격차 •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 •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에 대한 익스포저(대인지뢰, 화학무기 등)
국가	환경	피투자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
	사회	사회적 위반 국가
부동산자산	화석연료	부동산자산을 통한 화석연료(추출, 저장, 운송 및 제조 관련) 익스포저
	에너지효율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동산자산 익스포저

자료: EC(2022)

회사 단위의 정성적 내용 또한 공시해야 하므로 금융회사는 PAIs를 식별하는 방식과 의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을 설명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관련한 보고기업의 조치, 향후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과 공급망 실사에 대하여 공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시 및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한 보고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 강령 및 표준 참조 사항 등을 밝혀야 한다.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단위' 공시 사항에 따라 EU 역내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적용되는 금융상품은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이들 카테고리는 지속가능성은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SFDR 제8조(라이트 그린), 지속가능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제9조(다크 그린), 8조 및 9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제6조로 분류된다. 보고기업은 역내에서 판매하는 모든 펀드에 대한 일부 정보를 공시하되, 8조 및 9조 펀드 투자자에게는 더 자세한 세부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표 Ⅲ-4〉 참조).

〈표 Ⅲ-4〉 SFDR 금융상품 단위 분류

구분	특징	공시 내용
제6조	제8조, 제9조에 해당되지 않는 금융상품	•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기를 통합하는 방식 • 위의 방식이 동 상품 수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제8조 (라이트그린)	지속가능성 특성을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투자를 목표로 하지 않는 금융상품	• 동 상품이 환경 또는 사회적 특성이나 양 특성을 동시에 촉진하는 방법
제9조 (다크그린)	지속가능한 투자를 주요 목표로 하는 금융상품	• 동 상품이 지속가능성 관련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 공시에 사용한 지수가 참조 벤치마크로 지정되어있는지 그 여부

자료: 심수연(2022)의 내용을 표로 정리함

SFDR과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기관에서 지침 문서를 발간하였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SFDR 2단계를 실현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우선 보고기업이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담는 PAIs 지표가 매우 광범위하여 적절한 투자 방식을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정적인 영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는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공시(CSRD 등)에서 요구하는 지표와의 일관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따라 자산 운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석하는 방식과 해당 영향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방식 사이에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분류체계 등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영역을 식별하고 규정 준수 사항을 일치시켜야 하는 부가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SFDR을 구현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과 표준이 부족하여 기업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는 지속가능성 규제 환경에 따라가기 어려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으며 주로 비재무정보를 담고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데이터의 품질과 가용성이 부족한 문제도 존재한다.

나.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주요 내용

유럽 재무보고자문그룹(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이하 'EFRAG'라 함)은 2001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설립한 회계기준 자문기구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1년 6월 EFRAG 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기구인 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 이하 'SRB'라 함)를 설치하여 유럽에 적용되는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이하 'ESRS'라 함)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EFRAG는 2022년 4월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11월 최종안을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23년 6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SRS 최종안을 위임 법률(Delegated Act)로 채택하여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표준은 2024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42]

ESRS는 기존 EU 법령과 TCFD, ISSB, GRI 등 국제 이니셔티브에서 제시하는 표준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공시 표준이다. ESRS는 2개의 공통 표준(Cross-cutting standards)을 제시하고 주제별 표준으로 5개의 환경(E) 기준, 4개의 사회(S) 기준, 1개의 지배구조(G) 기준으로 이루어져 총 10개의 지속가능성 관련 주제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Ⅲ-2〉 참조).

유럽 그린딜의 일부인 CSRD에 따라 EU 역내 기업은 ESRS의 공시 프레임워크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가 있다. 즉, ESRS는 역내 기업이 CSRD를 따르기 위한 이행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고기업은 경영진 보고서(Management Report)의 별도의 섹션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라는 이름으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지속가능성 공시는 제 3자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ESRS가 ISSB와 SEC에서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및 규제안과 가장 다른 점은 이중 중요성(Double

42) ESRS는 CSRD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시 표준'으로, CSRD의 시행 시기, 적용 기업에 맞추어 시행됨

Materiality)의 개념을 차용하고 보고기업에 Scope 3 배출량 공시 의무를 부과한 점이다. 이에 대한 사안은 '다.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의 주요 쟁점 사항'에서 자세히 다룬다.

〈그림 Ⅲ-2〉 유럽지속가능성공시표준(ESRS) 최종안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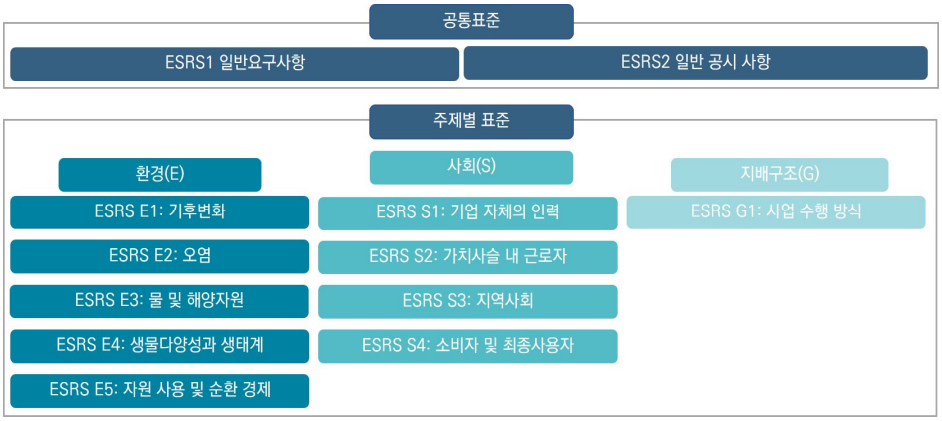

자료: EY(2022)

보고기업은 ESRS에 따라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과 위험 및 기회에 관한 중요한(Material)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어, 보고기업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산업(Sector-agnostic) 공시, 보고기업이 속한 소속 산업(Sector-specific) 공시, 그리고 보고기업이 고유하게 지닌 기업단위(Entity-specific) 공시로 분류된다. 주제별 표준에 속하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공시기준은 전체산업 기준이며, EFRAG는 향후 소속 산업 기준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1) 공통표준(Cross-cutting standards)

ESRS1은 일반 원칙(General Requirements), ESRS2는 일반 공시(General Disclosure)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SRS1은 보고기업이 ESRS 체계에 따라 어떻게 공시해야 하는지 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기업은 지속가능성 정보가 이해관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염두해야 하는데, 이중 중요성을 기반으로 하는 ESRS는 '이해관계자'의 의미를 투자자에 국한하지 않고 기업의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주거나, 반대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 인식한다. 따라서 보고기업은 기업의 행위나 가치사슬을 통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용자'를 식별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ESRS1은 ESRS의 목적과 범위,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기반으로 하는 공시원칙,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활동에 대한 공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지속가능 공시의 시계열(Time Horizon) 등 전체 기준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ESRS2는 보고기업이 주제별 표준(E1-E5, S1-S4 및 G1)을 공시할 때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다섯 가지 항목(① 공시 준비 기본 사항, ② 거버넌스, ③ 전략, ④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⑤ 지표 및 목표)을 제시하여 TCFD 권고안에 기초하면서도 보다 세분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보고기업은 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업 개요, 가치사슬과 범위에 대한 근삿값, 추정의 불확실성, 공시를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발생한 변경 사항 그리고 이전 기간의 오류와 같은 특정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ESRS2는 ESRS 공통표준(Cross-cutting Standards) 및 주제별 표준(Topical Standards)이 제시하는 공시 항목이 어떤 EU 법규(SFDR, EU 기후법 등)와 연결되어 있는지 표를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공시기준을 세운 근거를 보여준다(ESRS2 Appendix C). 또한 ESRS2에서 요구하는 각 공시 요구사항이 실무적으로 주제별 표준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원칙을 통하여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ESRS2 Appendix D).

2) 주제별 표준(Topical standards)

주제별 표준은 전체산업(Sector-agnostic)에 적용되는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관련된 공시 사항을 제시한다. 주제별 표준의 목표는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하여금 보고기업이 환경, 사회,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이와 관련한 중요한 위험과 기회, 마지막으로 보고기업의 가치 창출 능력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키는 데 있다. 주제별 표준에서 보고기업은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명시해야 하며, 관련 정책, 목표, 대책과 자원을 포함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방안, 주제별 표준과 관련된 지표와 목표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표 Ⅲ-5〉 ESRS2 공통공시 항목

공통공시 항목	상세 내용		코드
공시준비를 위한 기본 사항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준비를 위한 일반 사항		BP-1
	특정 상황과 연관된 공시		BP-2
거버넌스	기업 행정, 관리 및 감독 부서의 역할		GOV-1
	기업 행정, 관리 및 감독 부서가 수취한 지속가능성 정보와 관련 문제 해결 방안		GOV-2
	기업 인센티브 제도에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통합		GOV-3
	지속가능성 실사에 대한 정보		GOV-4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GOV-5
전략	마켓포지션, 전략,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		SBM-1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견해		SBM-2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이들과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 사이의 상호 작용		SBM-3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중요성 평가 과정 공시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 식별, 그리고 평가 과정에 대한 설명	IRO-1
		ESRS 공시 요구사항에 적용되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	IRO-2
	정책 및 조치에 대한 공시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을 관리하기 위해 채택된 정책	DC-P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조치 및 자원	DC-A
지표 및 목표	중요한 지속가능성 문제와 관련된 지표		DC-M
	목표를 통한 정책 및 조치의 효과 추적		DC-T

자료: EFRAG(2022c)

주제별 표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5개의 환경(E) 기준, 4개의 사회(S) 기준, 1개의 지배구조(G)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총 10개의 ESG 주제별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 부문은 E1 기후변화, E2 오염, E3 수자원 및 해양 자원, E4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그리고 E5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에 대한 기업의 공시 표준을 제시한다. 사회 부문은 S1 기업 자체의 인력,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S3 지역사회, 그리고 S4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기업의 공시 표준을 제시하고, 마지막 지배구조 부문은 G1 사업 수행방식에 대한 공시 표준을 제시한다.

〈표 Ⅲ-6〉 ESRS 주제별 표준 중 환경(E) 중 기후변화(E1) 공시 사항

주제	공시 항목		상세 내용	코드
기후 변화 (E1)	ESRS 2 일반 요구사항		GOV(거버넌스), SBM(전략), IRO(영향, 위기 및 관리)의 전반적인 정보	-
	공시 요구사항	지배구조	ESRS G2 GOV-3 관련 인센티브 제도 내 지속가능성 관련 성과 통합	-
		전략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전환 계획	E1-1
			ESRS 2 SBM-3과 관련 중요한 영향, 위험 및 기회와 이들과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 사이의 상호 작용	-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ESRS 2 IRO-1 중요한 기후 관련 영향, 위험 및 기회를 식별 및 평가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	-
	영향, 위기 및 기회 관리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정책	E1-2
			기후변화 정책과 관련된 조치 및 자원	E1-3
	지표 및 목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관련 목표 (ESRS2 GOV-3)	E1-4
			에너지 소비 및 혼합	E1-5
	당기순이익 기준 에너지 집약도		총 Scope 1, 2, 3 및 총 온실가스 배출량	E1-6
	순매출기준 온실가스 집약도		탄소배출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온실가스 제거 및 완화 프로젝트	E1-7
			내부 탄소 가격	E1-8
			잠재적인 기후 관련 기회와 전환 및 물리적 위험이 잠재적으로 재정 요소에 미치는 영향	E1-9

자료: EFRAG(2022d)

이중 대표적인 환경 공시 부문에서 다른 지속가능 공시기준 및 규제(IFRS S2, SEC 기후 관련 공시 규정 등)에서도 공통으로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기후변화(E1) 부문은 ESRS2에서 요구하는 다섯 가지 필수 항목(① 공시 준비 기본 사항, ② 거버넌스, ③ 전략, ④ 영향, 위험 및 기회 관리, ⑤ 지표 및 목표)에 대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추가로 Scope 1, 2, 3 공시 내용을 담고 있는 당기순이익 기준 에너지 집약도와 순 매출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기후변화(E1)에 대한 자세한 공시 사항은 〈표 Ⅲ-6〉과 같다.

다. 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의 주요 쟁점 사항

1) 이해관계자 중심의 이중 중요성

ESRS의 핵심가치인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은 지속가능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Outside-In) 관점에서의 재무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만을 다룰 뿐만 아니라 기업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Inside-Out) 관점에서의 영향 중요성(Impact Materiality)까지 고려한다. 즉, 일반목적 재무보고를 이용하는 투자자뿐만 아니라 보고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까지 고려하는 것이다. ESRS의 이중 중요성은 양 중요성(재무, 영향)의 교집합이 아닌 합집합인 모든 부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고기업은 재무 중요성을 가진 정보와 영향 중요성을 가진 정보뿐만 아니라, 두 가지 관점을 모두 포괄하는 중요성을 가진 정보 또한 공시해야 한다.

재무 중요성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가 보고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에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이와 관련된 정보는 중요한(Material) 정보로 식별된다. 해당 위험과 기회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사건에 기인하여,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었거나 미래 사건의 결과로 자산과 부채에 대한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위험과 기회의 특성이 '자산'의 회계학적 정의에는 충족되지 않지만 비즈니스 가치 창출 활동과도 연관돼 미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고기업은 이와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영향 중요성에서 보고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이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으로 사람과 지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면 그 정보는 중요한(Material) 정보로 식별된다. 이에는 비즈니스 활동이 사람과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가치사슬과 연결된 영향까지도 포함된다.

가치사슬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면 이는 보고기업의 사업 운영, 제품 혹은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인식하는 것이 영향 중요성의 핵심이다. 즉, '온실가스 간접 배출'에 해당하는 Scope 2와 Scope 3 배출량도 보고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식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고기업이 제품 생산을 위해 코발트를 가치사슬 내 기업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나 만약 가치사슬 내 기업이 코발트를 채굴하는 과정

에서 아동을 노동자로서 착취했다면, 이는 보고기업이 인류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e.g. 아동 노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대로 가치사슬 내 기업이 보고기업과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보고기업의 가치사슬과 연관은 없는 경우 해당 파트너의 온실가스 배출은 보고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보며, 따라서 보고기업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연관된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할 필요가 없다.

2) 보고의 형태

CSRD가 제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ESRS 1에 따라 EU 역내 보고기업은 별도의 지속가능성 보고서가 아닌 경영진 보고서(Management Report)의 일부로서 지속가능 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라는 제목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무정보와 지속가능성 정보의 상호 연결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두 가지 정보를 한 곳에 담아 보고기업의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각국 감독당국은 보고기업이 CSRD를 올바르게 준수했는지 그 여부에 대한 원활한 감독을 기대할 수 있다.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

ESRS와 다른 공시규제와의 차이점은 Scope 3 공시 관련 요구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ISSB의 IFRS S2, SEC의 기후공시 규칙안은 Scope 1, 2 배출량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ESRS는 Scope 1, 2, 3 모두에 대해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43]

다른 공시기준이나 규제와 비교하였을 때, ISSB의 IFRS S2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이전에는 온실가스 집약도에 대한 공시 내용을 포함했으나 글로벌 의견수렴을 통해 온실가스 집약도 공시를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ESRS는 온실가스 집약도와 관련된 공시를 요구한다. 이와 더불어 EU는 Scope 3 배출량을 온실가스 배출량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전환 위험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한다. 이에 따라 역내 보고기업은 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Scope 3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ESRS와 달리 ISSB는 Scope 3 공시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데이터의 제약 등 현실적인

43) ISSB 또한 Scope 3 배출량을 의무화하였지만 제도 시행 후 1년간 Scope 3는 공시 의무에서 예외됨

이유를 들어 IFRS S2 의견수렴 과정에서 Scope 3 시행일을 연기하였다. IFRS S2, 그리고 다음에 설명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과 비교하면 온실가스 집약도와 Scope 3 공시 요구사항에 대하여 ESRS E1에서 더 높은 수준의 공시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2. 미국 SEC의 기후 관련 재무공시 도입안

가. SEC 규칙안 개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기업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2022년 3월, 기후 관련 리스크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한 상장기업의 공시를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후 관련 사건(물리적 리스크)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배출량 등과 같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전환 리스크)이 있는 필수 정보를 기존 재무공시의 연장선에서 연간 사업보고서에 포함하는 것이다. SEC는 기후공시 규칙 최종안을 2023년 4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종안 발표는 현재 지연되고 있다.

나. SEC 규칙안의 세부 내용

1) Regulation S-K 및 Regulation S-X 내 규칙 신설을 통한 기후공시

SEC의 규칙안은 TCFD 권고안에 기반한다. 이는 많은 글로벌 기업의 지속가능 공시와 국가의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이 TCFD 권고안의 내용을 채택하고 있어 정보를 일관되게 전달하고 비교하기에 쉽기 때문이다. SEC는 규칙안에서 비재무정보 공시 규칙인 Regulation S-K에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장(Subpart 1500: Climate-Related Disclosure)을 신설했다. SEC 규칙안은 TCFD 권고안과 유사하게 Regulation S-K에서 기후 관련 위험과 관련된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또한 TCFD 권고안은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가 잠정적으로 손익계산서 중심의 재무성과와 대차대조표 중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SEC의 규칙안은 재무정보 공시 규칙인 Regulation S-X에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조항(Article 14: Climate-Related Disclosure)을 추가하여 기후변화가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의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주석 공시의 범주는 재무영향 지표(Financial Impact Metrics), 지출 지표(Expenditure Metrics), 추정 및 가정 지표(Financial Estimation and Assumptions)로 나누어진다.

2) Regulation S-K 개정을 통한 기후 관련 공시 사항

SEC는 Regulation S-K에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장을 신설하였으며, 해당되는 항목은 1500부터 1506이다. TCFD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사안(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을 다루고 있는 항목은 1501부터 1504이며, 1505부터 1506은 Scope 1, 2 배출량 공시 인증 사항과 기후와 관련된 목표 공시 사항을 다루고 있다.

항목 1501은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항목 1501에 따라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이사회 감독과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경영진의 역할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항목 1502는 보고기업의 비즈니스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위험은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보고기업은 단기, 중기, 장기 기간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공시해야 한다. 해당 기후 관련 위험이 물리적 위험(급성, 만성 등)인지 전환 위험(규제, 기술, 시장, 평판 등)인지 식별하고 위험의 특성과 위험이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물리적 위험의 공시의 한 예시로 보고기업의 건물이나 공장이 풍수해 위험 지역에 위치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보고기업은 해당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비즈니스 유형, 가치사슬 내 기업, 기후 관련 완화(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 조치에 대해 기후 관련 위험이 미치는 영향을 공시해야 한다.

항목 1503은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기 위해 보고기업이 따르는 절차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보고기업은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할 때 다른 성질의 위험과

비교를 통해 기후 관련 위험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같이 기후와 관련된 규제 요건이나 정책을 고려하는 방법과 잠재적인 위험을 평가할 때 기술 변화나 시장 가격의 변화 측면에서 기후 관련 위험의 중요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보고기업은 특정 기후 위험에 대한 완화 및 적응 조치를 결정하는 과정과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또한 보고기업은 위에서 공시한 프로세스가 전반적인 위험 관리 체계와 프로세스에 통합되는 방식을 공시해야 한다.

항목 1504는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공시 방법에 대해 다룬다. 항목 1504에 따라 보고기업은 Scope 1, 2에 해당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업은 해당 사항을 공시할 때, 조직(Organizational)과 운영(Operational) 경계를 설정하여 Scope를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 강도를 이산화탄소 환산톤(CO2e)으로 측정한 배출량의 총합을 공시해야 한다. Scope 3 배출량 공시의 경우 보고기업이 Scope 3 배출량이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웠다면 이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Scope 3 배출량 공시 기업은 배출량 산출에 포함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의 범위를 식별하고 Scope 3 배출량 산출에 사용되는 데이터 출처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데 있어 중요한 데이터가 누락되는 경우, 보고기업은 이에 대해 공시하고 대체 데이터나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이러한 누락 사항을 해결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

항목 1505는 Scope 1, 2 배출량 공시 인증에 대해 다루는데, 이는 본보고서의 '다. SEC 규칙안의 주요 쟁점 사항' 중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에 상세히 설명한다.

항목 1506은 기후 관련 목표 공시 사항으로 보고기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 관련 목표를 세운 경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과 배출의 범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위한 측정 단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타임라인 등을 공시해야 한다. 보고기업은 목표 달성 진척도와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회계연도마다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표 Ⅲ-7〉 Regulation S-K 기후 관련 공시 Item

Item	항목	주요 내용
1501	지배구조	기후 위험과 관련한 이사회의 감독 기능과 이를 관리 및 평가하는 경영진의 역할 공시
1502	전략, 사업 모델, 전망	기후 위험이 기업의 전략, 사업 모델, 전망 및 재무제표에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기, 중기, 장기 영향 공시
1503	위험 관리	기후 위험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절차와 해당 프로세스가 기업 위험 관리 시스템 내 통합 여부 공시
1504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Scope 1, 2 배출량, 배출량 측정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 및 금융 배출량 공시
1505	Scope 1, 2 배출량 공시 인증	배출량 공시에 대한 인증보고서(Attestation report) 제출
1506	기후 관련 목표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배출량 유형, 측정 단위, 목표 달성 기간, 중간 목표, 달성 전략 등 포함) 공시

자료: SEC(2022)

〈표 Ⅲ-8〉 Regulation S-K 관련 세부 공시 사항

항목	주요 내용	
지배구조 (1501)	이사회 감독	①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이사회 구성원 또는 위원회 ② 기후 관련 위험을 논의하는 절차 및 빈도 ③ 이사회 또는 위원회가 기후변화 관련 위험을 사업전략, 위험관리 및 재무 감독의 일부로 고려하는지 여부 ④ 이사회가 기후 관련 목표 또는 목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정하고 감독하는 방법
	경영진의 역할	① 경영진 또는 관련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책임 여부 및 직위 또는 전문성 ② 경영진 또는 관련 위원회가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독하는 절차 ③ 경영진이 이사회나 관련 위원회에 기후 관련 위험에 대하여 보고하는지 여부 및 빈도
전략, 사업 모델, 전망 (1502)	① 사업 유형 및 운영 위치 등 ② 제품 또는 서비스 ③ 가치사슬의 공급자 및 기타 참여자 ④ 새로운 기술 또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기후 관련 위험을 완화하거나 적응하기 위한 행위 ⑤ 연구개발 관련 지출 ⑥ 기타 중요한 변경 또는 영향	

〈표 Ⅲ-8〉 계속

항목	주요 내용	
위험 관리 (1503)	기후 관련 위험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설명하도록 요구 ① 다른 위험과 비교하여 기후 관련 위험의 상대적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법 ② 기후 관련 위험을 식별할 때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같은 규제 요건이나 정책을 고려하는 방법 ③ 잠재적 위험을 평가할 때 고객의 선호도 변화, 기술 변화 또는 시장가격 변화 등을 고려하는 방법 ④ 기후 관련 위험의 잠재적 규모와 범위의 평가 방법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의 중요도를 결정하는 방법 기후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를 설명할 때 해당되는 경우 다음을 공시 ① 특정 위험을 완화, 수용 또는 적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② 기후 관련 위험을 해결하는 데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방법 ③ 우선순위가 높은 위험을 완화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방법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 (1504)	Scope 1, 2	① 온실가스 구성요소 별 배출량 ② 이산화탄소환산톤(CO_2e)로 측정한 배출량 총합
	기술적 사항 및 금융 배출량	① 배출량 측정과 관련한 상세한 기술적 사항(배출 계수, 주요 가정, 외부데이터 제공업자, 데이터 갭 등)

자료: 홍지연(2022)

3) Regulation S-X 개정을 통한 재무제표 주석 형식으로의 공시

SEC는 Regulation S-X를 개정하여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조항(Article 14)를 기후 위험에서 비롯된 물리적 위험 및 전환 위험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의 형식으로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동 규칙안이 요구하는 주석 공시는 재무 영향 지표, 지출 지표, 추정 및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 세 가지이다.

재무 영향 지표는 심각한 기상이변 및 자연환경 변화와 같은 물리적 위험과 기업의 전환 활동이 재무제표의 관련 항목(Line item)에 미치는 양적 영향을 의미한다. 이때 보고기업은 양적 영향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으로 나누어 각각의 총액을 공시해야 한다. 물리적 위험에 대한 예로는 기상 악화로 인한 기업 휴지 발생이나 공급망 중단으로 인한 수익이나 비용의 변화, 자산(재고, 유·무형자산 등)가치의 변동, 준비금의 변화나 예상 보험손실 총액의 변화 등이 있다, 전환 위험에 대한 예로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로 인해 매출 계약 해지 발생과 이로 인한 매출 및 비용의 변화나 특정한 기후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이율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항이 있다. 공시 대상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의 절댓값의 합이 관련 재무제표 항목의 1%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모든 영향의 절댓값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공시할 필요는 없다.

지출 지표와 관련하여 보고기업은 기후 위험의 물리적 위험이나 전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회계 연도 동안 발생한 지출 및 자본화 비용의 총액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기준은 재무영향 지표와 동일하게 지출 금액의 합계액이나 자본화 금액의 합계액이 각각 전체 지출 항목 또는 전체 자본화 항목의 1%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모든 영향의 절댓값의 합이 1% 미만인 경우 공시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기후 관련 위험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된 추정 및 가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보고기업은 기후와 관련된 위험이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사용된 추정과 가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 여부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정성적인 측면에서 공시해야 한다.

다. SEC 규칙안의 주요 쟁점 사항

1) 투자자 중심의 단일 중요성

기후 관련 재무공시 규칙안은 기존 재무공시의 연장선에서 지속가능 정보가 기업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따라서 투자자 중심의 단일 중요성 관점을 가진다. SEC 위원회와 미국 대법원의 판례는 '중요성(Materiality)'에 대해 같은 선상에서 해석한다. 즉, 합리적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거래할 때나 주주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때, 그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사안은 '중요(Material)'하다고 간주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이 그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투자자의 결정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공시해야 하는 기후 관련 재무정보로 간주된다.

2) 보고의 형태

규칙안이 발표된 뒤 Regulation S-K나 S-X 외 기후 관련 공시를 위한 독립적인 규정 채택을 권고하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SEC는 해당 규정이 투자자가 보고기업의 비즈니스 특징과 미래 전망, 재무 성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사항이므로 기존 재무공시 규정과 같은 선상에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보고기업은 보고 위치와 관련하여 연례보고서 내 위험요인(Risk Factors) 또는 경영진의 의견 및 분석을 담은 MD&A(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of financial condition and results of operation) 등의 형태로 증권신고서나 연례보고서의 한 부분 또는 주석으로 기후 관련 공시를 통합시킬 수 있다.

3)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범위

가) Scope 3 공시 사항

SEC의 규칙안은 Scope 3 배출량 산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근거 또는 신의에 따라 공시할 경우 허위나 오류가 있더라도 '사기 진술(Fraudulent statement)'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안전 조항을 마련했다.[44] 또한 소규모 기업에 대해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Scope 3 배출량이 중요(Material)하거나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서 Scope 3를 포함한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업이 Scope 3 배출량을 공시하는 경우 배출량 총합 및 구성 요소별 배출량과 함께 배출량 산출에 포함된 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 활동 내역을 모두 공시해야 한다. 또한 특정 공급망 활동의 배출량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공급망 활동의 배출량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또한 SEC 규칙안은 보고기업이 과거에 자체적으로 수행하였던 특정 공정을 외주화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중요성(Materiality)' 결정 시 이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감안하고 공시 대상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한다.

나) Scope 1, 2 배출량 공시 인증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공시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가정은 외부 데이터의 질과 양에 의존적이므로 보고기업은 배출량 공시의 일관성, 비교가능성, 그리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45]

그러나 SEC는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및 인증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증

44) 정신동(2022)
45) 정신동(2022)

보고 의무를 조기 제출 기업으로 한정하고 Scope 3를 제외한 Scope 1, 2 배출량에 대해서만 해당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인증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여된 2년 동안 '제한된 인증'을 제공하고 그 이후에는 '합리적 인증'을 제공하도록 했다. '제한된 인증'은 Scope 1, 2 배출량 공시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판단(Conclusion)'을 내려주는 일반적인 인증 수준을 의미하며, '합리적 인증'은 동 공시가 중대한 오류 없이 규제 기준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다는 '의견(Opinion)'을 제공하는 연결재무제표의 회계감사에 요구되는 인증 수준이다.

〈표 Ⅲ-9〉 Scope 1, 2, 3 배출량 공시 일정 및 인증 시점

구분	공시 일정		Scope 1, 2 공시 인증 시점	
	Scope 1, 2	Scope 3	제한된 인증	합리적 인증
상장 대기업	FY 2023 (2024년 제출)	FY 2024 (2025년 제출)	FY 2024 (2025년 제출)	FY 2026 (2027년 제출)
상장 중견기업	FY 2024 (2025년 제출)	FY 2025 (2026년 제출)	FY 2025 (2026년 제출)	FY 2027 (2028년 제출)
상장 소기업	FY 2024 (2025년 제출)	FY 2025 (2026년 제출)	면제	면제
소규모 보고기업	FY 2025 (2026년 제출)	면제	면제	면제

자료: Cadwalader, Wickersham & Taft(2022)